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799 약사법위반
피 고 인 1. 甲
2. 乙
검 사 정택률(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대전 중구 크리닉 건물 3층 乙이비인후과에서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乙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甲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6. 15:02경 대전 중구 크리닉 3층 乙이비인후과 접수대에서 처방

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 돼요?"라고 묻자 "1층, ○○약국."이라고 대답하고, "약국 거기만 가야 돼요?"라고 묻자 "만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대답하여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乙

피고인은 종업원인 甲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甲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 乙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과 간호사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甲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1층에 있는 ○○약국으로 가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과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교육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乙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

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지 못한 피고인 乙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乙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乙은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甲은 초범이고, 피고인 乙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선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종오 _____